

광주지방법원 2022. 11. 23 선고 2022나52903(본소), 2022나52910(반소) 판결

[부당이득금반환 · 손해배상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B

변 론 종 결 2022. 10. 12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3.

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0가단516136(본소), 2021가단 6223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항소 및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원고(반소피고) :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82,63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2. 5.부터

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 :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신, 판사 정영하, 판사 황진희